

● 제26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2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234

I. 개정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이윤희 의원 외 19명(찬성자 8명)

나. 제안일 : 2016. 5. 30.

다. 회부일 : 2016. 5.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을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명확히 하고, 하반기에 등록하는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이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연구단체들의 입법 활동 활성화와 정책 개발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요건을 갖추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4조제1항).

- 하반기 등록하는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정비하고 중간보고서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안 제11조).
-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존속 기한을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12.31.)까지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한 의원 연구단체의 중간·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의 입법 활동 활성화와 의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2 의원 연구단체 활동 기간 정비 등(안 제4조·제8조·제11조·제13조)

-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키우고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원들의 공통된 관심 분야에 대해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교섭단체를 달리 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제3조)는 최초 등록 후부터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제13조), 2016년 6월 현재 12개 연구단체가 활동 중에 있음(표 1 및 별첨 참고).

<표 1> 제9대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및 지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활동 현황	신규 등록	5개	6개	-	3개
	등록 취소	-	1개	-	1개
	누계	5개	10개	10개	12개
지원 예산	1개 단체당 지원비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125만원
	총 금액 (의정운영공통경비 5% 이내)	1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하반기에 배정된 500만원을 2015년 등록 연구단체(10개) 수로 나눈 값으로, 실제로는 연구활동비 지원을 요청한 7개 단체에 평균 71만원을 지원했음.

- 연구단체는 의원 1인당 3개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어(제3조제2항) 새로운 관심 분야의 연구단체가 신설되어도 기존의 연구단체를 탈퇴하지 않는 한 신규 연구단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왔음.
-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단체당 최대 600만원)로 정해져 있는 연구단체 지원 예산(제7조제1항)의 한계 상, 연구단체 수가 증가할수록 개별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줄어들어 연구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단체 존속 기한을 ‘의원 임기만료일’에서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변경해 의원의 연구단체 신설과 가입이 쉽도록 함으로써 의원 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매년 연구단체 등록 때마다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신청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짐.
- 한편, 개정안은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연구단체의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안 제11조제2항), 이는 연구단체 활동 기간 단축(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에 맞춰 연구단체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표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u>연구단체</u>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u>해당 연도 연구단체</u>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④ (생략)</p> <p>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u>전년도 연구활동 실적</u>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u>연구활동 실적</u>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u>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u>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u>12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u>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u>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서와</u>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u>12월 30일까지</u>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u>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임기만료일까지</u>로 한다.</p>	<p>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u>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u>로 한다.</p>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연구단체 존속 기한을 연구단체 등록일 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의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보다 다양한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의회 내 입법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에 맞춰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한 연구단체의 결과활동보고서 제출 기한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 단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연구단체를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등의 절차 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제도 변화로 인한 연구단체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려우므로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함.

별첨

제9대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현황

연구단체명		활동 기간(최초 등록 시기)		
		2014.7.~12.	2015.1.~12.	2016.1.~12.
계		5개	10개	12개
연구단체 1개당 지원된 연구활동비		300만원	200만원*	125만원
1	미래서울연구회	신규(하반기)	활동	-
2	서울교육혁신연구회	신규(하반기)	활동	활동
3	서울노동복지포럼	신규(하반기)	활동	활동
4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신규(하반기)	-	-
5	포럼 평화와 경제	신규(하반기)	활동	활동
6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		신규(상반기)	활동
7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신규(상반기)	활동
8	서울살림포럼		신규(상반기)	활동
9	어린이청소년의 친구들		신규(상반기)	활동
10	여성과도시문제연구회		신규(상반기)	활동
11	지방자치단체성공사례연구회		신규(상반기)	활동
12	메니페스토 연구회			신규(상반기)
13	스피치 연구의원 동우회			신규(상반기)
14	역사교육 연구회			신규(상반기)

* 2015년 10개 의원 연구단체 상·하반기 총 지원 예산 2,000만원에 대한 평균값으로, 실제 상반기에는 10개 연구 단체에 평균 150만원을, 하반기에는 예산 지원을 추가로 요청한 7개 연구단체에 평균 71만원을 지원했음.